

# 발명진흥법 공포

발명진흥법이 지난 3월 3일 국회를 통과, 24일 법률 제4757호로 공포됨으로써 발명진흥에 관한 업무가 더욱 본격화되게 되었다.

동 법은 지난 2월 金紀培 의원(민자)을 비롯한 국회의원 172인의 발의로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.

이번에 정부가 공포한 발명진흥법은 지난 1958년 제정된 이래 단 한번의 개정작업도 거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발명보호법을 폐지하고 그 대체법으로 새로 제정된 것으로서 이 법은 發明振興을 통한 국내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의 발명분위기를 진작하고, 기술개발의 연구효율을 제고시키는 한편 발명성과의 급속한 권리화 및 실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발명진흥종합시책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바, 그 주요골자로는 ▲특허청장 주관 발명진흥연차대회 개최 ▲학생발명반 육성 및 산업재산권 교과과정 반영 ▲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확대 ▲특허기술정보센터 운영 ▲기업의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확대 ▲우수발명의 실용화 촉진 ▲발명진흥단체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.

발명진흥법의 전문을 소개한다 <편집자 주>

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발명”이라 함은 특허법·실용신안법 또

는 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·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.

2. “직무발명”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 제1항·실용신안법 제11조 및 의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,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의 발명·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.

3. “자유발명”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말한다.

4. “종업원 등”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 제1항·실용신안법 제11조 및 의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,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.

5. “사용자 등”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 제1항·실용신안법 제11조 및 의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,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.

6. “개인발명가”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.

7. “특허관리전담부서”라 함은 사용자 등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획·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.

제3조(발명진흥종합시책) ① 정부는 매년 발명의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(이하 “발명진흥종합시책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발명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국민의 발명에 대한 인식제고
2. 발명활동의 진작과 발명성과의 권리화 촉진
3. 우수발명의 사업화 촉진
4. 기타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 4조(발명진흥연차대회 개최) ①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한다.

② 제 1항의 발명진흥연차대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

1. 발명에 관한 다음 각목의 시책발표
  - 가. 발명진흥종합시책 실적의 평가 및 계획
  - 나. 산업재산권정보화사업 실적의 평가 및 계획
2. 발명진흥 유공자에 대한 표창
3.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진흥에 관련된 사업

## 제2장 발명의 진흥

### 제 1절 발명에 대한 인식제고

제 5조(발명의 인식제고와 발명활동의 촉진) 특허청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와 발명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

1. 발명장려 행사의 개최
2. 학생발명활동의 촉진
3. 우수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 및 우수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
4. 발명활동에 대한 산업재산권정보 등의 지원
5.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
6. 발명유공자 및 우수발명의 발굴·포상
7. 기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와 발명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 6조(학생발명활동의 촉진) ① 정부는 교육법 제 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(이하 “각급학교”라 한다)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의 생활화를

진작시킴과 아울러 나아가 기술개발인력의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각급학교에 학생발명반의 설치·운영과 그 활성화를 위한 지원
2. 각급학교 학생발명반 지도교사에 대한 우대 조치
3. 각급학교의 당해 학교내 또는 각급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발명촉진 행사에 대한 지원

③ 정부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거나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 및 강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 7조(발명공작교실의 설치) ① 정부는 학생, 청소년 및 국민의 발명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용자 등의 시설물에 부설하여 발명공작실습을 위한 시설물(이하 “발명공작교실”이라고 한다)을 설치·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② 특허청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발명 공작교실의 설치·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용자 등과 협의할 수 있다.

③ 특허청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발명공작교실의 설치·운영을 지원하는 사용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발명공작교실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제 2절 직무발명의 촉진

제 8조(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) ① 정부는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

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표준이 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보급
2. 보상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의 작성 및 보급

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용자 등에 대하여는 제18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권리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행하여야 한다.

제9조(공동발명의 승계) 사용자 등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의하여 그 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당해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.

제10조(보상심의위원회) ① 사용자 등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직무발명보상규정
2.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 간의 이견조정
3. 기타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종업원 등의 대표 및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.

제11조(자유발명으로 보는 직무발명 등)

①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 등이 당해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출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서면으로 그 출원을 포기한 경우의 당해 직무발명은 자유발명으로 본다.

② 사용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

발명으로 보는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발명한 종업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보상 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.

제12조(비밀유지 의무)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공개, 의장등록을 받을 때까지 그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13조(직무발명의 출원유보 등) ① 사용자 등은 직무발명의 공개로 인하여 사용자 등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 등의 동의를 얻은 후 당해 발명의 출원을 유보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당해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발명을 한 종업원 등이 받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14조(특허법 등의 준용) 직무발명에 관하여 이 법에 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, 실용신안법 제11조 및 의장법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### 제3절 산업재산권 정보공급의 효율화

제15조(산업재산권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등) ① 특허청장은 사용자 등이 기술개발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그 합리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재산권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정보화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용자 등이나 국민에 대한 국내·외 정

보제공 실적 및 연차별 추진계획

2. 산업재산권 정보검색에 대한 외부용역 계획

3. 산업재산권 정보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용자 등에 대한 지원 계획

4. 산업재산권전산화사업의 전년도 실적평가 및 연차별 추진계획

5. 기타 산업재산권의 정보화에 관련된 사항

③ 특허청장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정보화사업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진흥연차대회에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6조(특허기술정보센터) ①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선행기술 정보자료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 특허기술 정보센터(이하 "정보센터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

1. 선행기술 연구를 위한 시설 또는 설비의 제공

2. 선행기술정보의 분석 및 제공

3. 외부용역에 의한 선행기술의 검색

4. 기타 선행기술 정보자료의 보급에 관한 사업

③ 특허청장은 정보센터의 설립을 허가하거나 기존의 법인을 지정하여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하도록 할 수 있다.

④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정보센터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⑥ 정보센터가 아닌 자는 특허기술 정보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⑦ 정부는 정보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.

⑧ 제 7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 17조(정보센터의 허가취소 등) 특허청장은 정보센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센터의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 제 1호의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.

1.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센터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

2. 제 1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

3. 제 16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 또는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

4.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

### 제 3장 발명의 권리화 지원

제 18조(선행기술조사)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는 경우 이의 신속·정확한 심사처리를 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국내·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선행기술정보의 수집 분석

2. 선행기술에 대한 외부용역 의뢰

3. 기타 선행기술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 19조(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) ① 특허청장은 사용자 등의 특허관리능력을 제고하여 국내·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정보제공

2. 특허관리전담부서 요원에 대한 산업재산권교육

3. 기타 특허관리전담부서설치에 관하여 필

## 요한 사항

제 20조(특허관리비용 지원) ①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발명가 또는 종업원 등이 연구개발한 발명의 신속한 권리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특허청장은 각급학교의 학생,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##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

제 21조(발명의 평가기관지정 등)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·공립연구기관, 정부출연연구소, 민간기업연구소 또는 기술성·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발명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평가기관(이하 “평가기관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을 우선적으로 분석·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한다.

④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.

1. 평가대상기술 및 평가범위
2. 평가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평가 수수료
3. 평가기관과의 업무협약

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기준, 평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 22조(평가기관의 지정취소)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.

1.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
2.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능력을 상실한 경우
3.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

제 23조(금융기관 등의 우선 자금지원) ① 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 등이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된 평가결과를 붙여 신청하는 경우,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(이하 “금융기관”이라 한다)에 당해 발명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.

1. 우수발명에 대한 투자 및 융자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
2. 담보 및 신용보증 관련사항
3. 기타 우수발명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사항

제 24조(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) ① 산업재산권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발명진흥회 소속하에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(이하 “알선센터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알선센터는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
1.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매매의 알선
2.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허여의 알선(산업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알선센터에 실시를 허여하

고, 알선센터는 이를 제3자에게 다시 허여하여 실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 경우, 그 제3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산업재산권자와 체결한 계약에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알선센터가 산업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).

3. 기타 산업재산권자의 사업화의 지원에 관한 사항

③ 정부는 알선센터의 설립, 운영 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

④ 알선센터의 구성, 기능, 운영, 정부출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 25조(시작품제작 지원) 정부는 제 21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의 시작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 26조(각종 규격의 개정요청)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이 기존규격과 달라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의 물품구매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특허청장은 당해 규격을 관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발명에 의한 제품이 구매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규격의 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 27조(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) 조달기금법 제 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다.

제 28조(세제지원) 정부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의 진흥,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 및 실시 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

제 29조(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)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쟁이 발생하여 당해 당사자간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해를 목적으로 한 알선·조정을 할 수 있다.

1. 산업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
2.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에 관련된 분쟁
3. 직무발명보상에 관련된 분쟁
4. 기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

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알선·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.

③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, 기능,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 30조(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촉진) ① 특허청장은 사용자 등이 다른 사용자 등과 산업재산권의 공유 또는 공동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각자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공동소유 또는 통상실시권의 상호허여(이하 “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”이라 한다)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에 대한 국내·외 정보제공
2.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을 위한 설명회 개최
3. 기타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

③ 특허청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협약을 체결한 사용

자 등이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대상 기술분야에 대한 공동기술 개발시 그에 따른 비용을 제 3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, 공업발전법 제 1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 개발자금, 동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발전기금,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등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제 31조(지적재산권 연구소) ① 사용자 등은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국내·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국내·외 지적재산권의 동향분석과 신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지적재산권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정부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재산권 연구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업비의 일부보조
2. 지적재산권에 관한 연구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
3. 기타 지적재산권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 제 6장 한국발명진흥회

제 32조(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) ①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·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(이하 “진흥회”라 한다)를 설립한다.

②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.

③ 진흥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④ 진흥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

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⑤ 진흥회가 아닌 자는 한국발명진흥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⑥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33조(사업) ① 진흥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

1. 발명진흥에 대한 조사·연구
2. 산업재산권 기술정보자료의 수집·분석 및 보급
3. 특허관리요원의 양성
4. 특허·실용신안·의장·상표공보의 보급
5. 특허청장이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위탁한 사업
6.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업

② 진흥회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③ 정부는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회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 34조(사업계획서 등) ① 진흥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, 예산서 및 결산서를 제출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특허청장은 진흥회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한다.

제 35조(기금의 조성 등) ① 진흥회는 이 법에 의한 발명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조성·운용할 수 있다.

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제 3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
2. 수익자 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
3. 차입금

4. 기금운용 수입금
5.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- ③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.
  1. 발명장려행사 등 발명활동의 촉진
  2. 우수발명시작품의 제작지원
  3. 발명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지원
  4. 발명의 양도, 실시허여와 창업자금지원 등의 사업화 지원
5. 직무발명제도 활용 촉진
6. 국내·외 출원 및 등록의 장려
7. 학생발명의 장려
8. 산업재산권정보의 조사·분석
9. 산업재산권 제도조사 및 연구개발
10. 학생, 영세발명가에 대한 무료변りに 관한 지원
11. 산업재산권의 사업화 자금지원시의 신용보증에 관한 지원
12. 기타 진흥회 회장이 발명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## 제7장 보 칙

제 36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이 법에 의한 특허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·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정보센터 또는 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 37조(청문) 특허청장은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센터의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와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정보센터, 평가기관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 정보센터, 평가기관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제8장 벌 칙

제 38조(벌칙) ① 제 12조의 규정에 위반

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 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제 1항의 규정의 죄는 사용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제 39조(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) 정보센터, 알선센터 및 진흥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.

제 40조(과태료) ① 제 16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6조 제 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② 제 32조 제 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 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③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④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⑤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특허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.

⑥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대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.

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폐지) 발명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특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제4조(한국발명특허협회에 관한 경과조치)

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발명특허협회는 그 재산을 출연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할 것을 특허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한국발명진흥회가 승계한다.

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발명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되는 발명보호법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  
<♣>

## 영업비밀 상담 및 교육 안내

특허청 조사과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한 기업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, 영업비밀 관리상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.

- 영업비밀 보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 
영업비밀의 개념,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의 범위, 영업비밀의 관리방법 등에 관해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.
-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.  
귀사(귀하)의 요청이 있으면 특허청 조사과의 영업비밀 전문 강사가 귀사(귀하)를 방문하여 단체교육을 실시하거나,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 드립니다.
-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 
영업비밀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종 자료나 안내서를 비치하여 요청이 있으면 제공해 드립니다.

### 영업비밀 보호 상담센터

전화 568-0121 (직통)      FAX : 553-9584  
568-8150 (273, 274)